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19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0.

발 의 자:인재근·양경숙·최혜영

문진석 • 남인순 • 주철현

고영인 · 최종윤 · 이장섭

서영석 · 노웅래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제재의 성격에 맞추어 합리적으 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.

따라서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가 생기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춰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46조).

법률 제 호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을 "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- 2.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혂 행 정 아 제4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46조(과태료)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<u>을 위반한</u>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. 1.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 | <삭 제> 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 니한 자 2.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 <삭 제> 육을 받지 아니한 자 3.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<삭 제> 위반한 자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이 부과 · 징수한다. 1.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 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 니한 자 2.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 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<신 설> 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부과・징수한

<u>다.</u>